

2023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공모

본회에서는 창원시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분야별로 각 단체의 신청서를 접수해 적격 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.
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원시관내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, 동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선정 방향

가.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은 본회에서 평가하여 선정

- 1) 신규 참가자, 여성·중증 장애인 참여 인원이 많은 단체
- 2) 운영 횟수, 홍보 매체 활용도가 높고 홍보 건수가 많은 단체
- 3) 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, 사업 장소의 편의시설 유무 등

나. 2022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를 준수한 단체 지원

다. 사업별 선정단체 개소 및 지원액은 본회에서 조정

※ 종목·지역·장애유형·단체별 안배 및 조정

2. 추진방향

- 본회에서 직접 사업 추진
- 선정단체에 설명회 추진

3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: 2023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

나. 기간: 2023. 4. ~ 9. / 6개월

다. 장소: 창원시 일원

라. 지원개소: 54개소(도비)

마. 지원내용: 운영비(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및 제세 등), 업무추진비(사업추진비)

바. 주 최: 창원시장장애인체육회

사. 주 관: 선정 단체

아. 후 원: 경상남도,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

자. 재정후원: 문화체육관광부, 국민체육진흥공단, 복권위원회

4. 지원현황

○ 지원내용: 54개소, 119,600천원(국비69,000, 도비50,600)

(단위: 천원, 개소수)

| 사 업 명 | 계 | 국비 | 도비 | 사업형태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◇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| 119,600(54) | 69,000(31) | 50,600(23) | |
| 1) 장애유형별생활체육교실 지원 | - | - | - | |
| 2) 생애주기별생활체육교실 지원 | - | - | - | |
| 3) 수중운동교실 지원 | - | - | - | |
| 4) 동호회(클럽) 지원 | - | - | - | |

※ 선정심의에 따라 사업별 지원 개소 및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.

5. 추진계획

가. 공모기간: 2023. 1. 27(금) ~ 2. 17(금) / 22일

나. 접수기간: 2023. 2. 6(월) ~ 17(금) / 12일

다. 신청대상: 창원시 관내 유관 기관 및 단체, 동호회

라. 신청자격

1) 창원시 소재 단체로서 장애인 참가인원이 10명 이상인 단체

※ 종목 및 장애유형의 특성으로 10명 미만인 단체의 경우 협의 후 신청

2) 통합정보시스템 전문체육(엘리트) 선수 및 동호회(클럽) 등록자는 교실 참여 불가

3) 지도자 이외 신청 종목 활동장소, 필요한동 용품 등이 구비되고 모든 운동 환경이 조성된 단체

4) 단체장 및 담당자가 신용불량자인 단체는 지원 불가

(계좌 및 법인카드 발급불가 단체 등)

5)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거나 발급 가능한 단체

마. 신청서 제출 안내

1) 제출처: 창원시장장애인체육회

- 담당자: 운영팀 백주안 대리(연락처: 055-262-7679)

- e-mail: hmpolat4@gnsad.or.kr

2) 제출방법: e-mail 접수

※ 한글파일 제출 (pdf 파일 X), 제출 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접수 유무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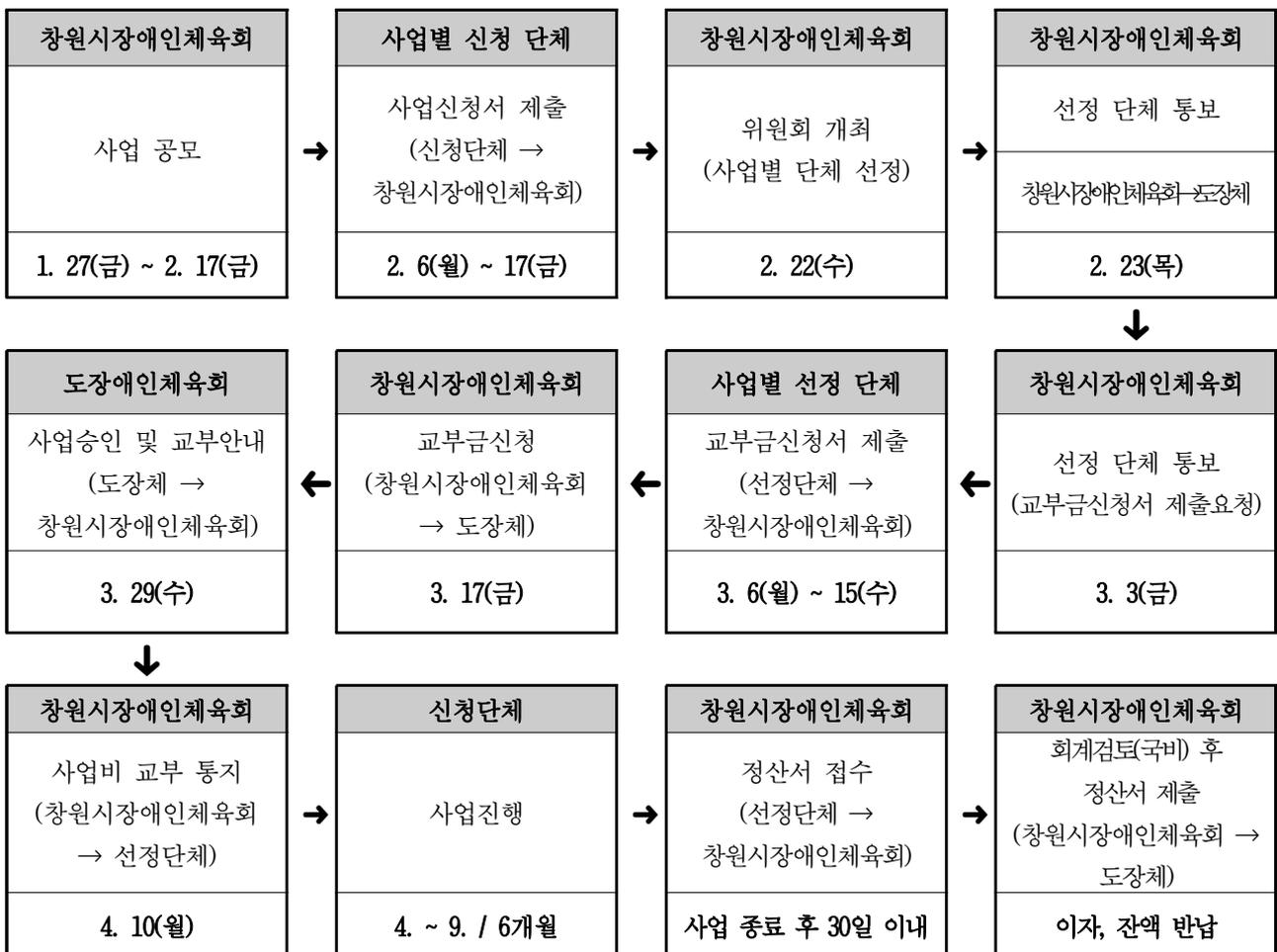
3) 제출서류

가) 제출 공문 1부 <서식: 붙임 참조>

나) 운영계획서 1부 <서식: 붙임 참조>

※ 본회 홈페이지에 양식 공지, 메일 제출 후 유선 연락 요망

바. 신청절차



※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사. 선정단체 발표: 2023. 3. 3(금)

- 1) 본 회 홈페이지(www.cwsad.or.kr) 게시
- 2) 단체별 개별통지

아. 행정사항

- 1)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,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전액 환수
- 2) 모든 사업은 현금집행 불가(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집행 원칙)
- 3) 국비지원 선정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(www.gosims.go.kr)에 기관등록 및 e나라도움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필수
- 4)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보류 또는 중단(회수)
 - ① 본회 및 생활체육위원회로부터 운영지적을 받은 단체
 - ② 운영진 부재 및 임원간의 내분이 있는 단체
 - ③ 운영진 지도력 결여로 인한 회원 간의 불화 단체
 - ④ 본회의 지시사항(자료요청, 결과보고, 정산보고 등)에 대해 불성실한 단체
 - ⑤ 본회에서 주최하는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선정단체 설명회, 역량 강화교육 등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
- 5) 2023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선정단체 행정평가 결과 40점 미만인 단체에 대하여 차기년도 사업 지원 제한 가능
- 6) 사업종료 후 정산은 30일 이내 정산(기간 준수)

6. 추진일정

| No | 내용 | 기간 | 세부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사업 공모 안내 | 1. 27(금) ~ 2. 17(금) | 공문 및 홈페이지 게재 |
| 2 | 신청서 접수 | 2. 6(월) ~ 17(금) | 16:00까지 접수 마감 |
| 3 | 위원회 개최 | 2. 22(수) | 사업신청단체 보고, 사업 지원 단체 선정심의 |
| 4 | 선정단체 통보 | 3. 3(금) | 단체별 공문 발송 |
| 5 | 교부금 신청서 접수 | 3. 6(월) ~ 15(수) | 16:00까지 접수 마감 |
| 6 | 사업 선정단체 설명회 | 3. 16(목) | 선정 단체 담당자 책자 배부 |
| 7 | 대장체 사업비 예산신청 | 3. 21(화) | 선정 단체별 자료 제출 |
| 8 | 단체별 교부금 지원 | 4. 10(월) | 선정 단체별 사업비 지원 |
| 9 | 단체별 사업 추진 | 4월 ~ 9월 | 계획에 따른 운영 준수 |
| 10 | 사업별 중간보고 | 4월 ~ 9월 | 월별 사업관리양식 작성 후 대장체 제출 |
| 11 | 단체별 사업 종료 | 4월 ~ 9월 | 사업 종료 연락 |
| 12 | 단체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접수 | 4월 ~ 10월 |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|
| 13 | 사업별 회계검토 의뢰 | 4월 ~ 12월 | 회계검토 의뢰 |
| 14 | 단체별 행정평가 실시 | 10월 ~ 11월 | 정산·결과보고 평가 실시 |
| 15 |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| 12월 | 회계검토보고 종료 |
| 16 | 사업별 잔액 및 이자 반납 | 12월 | 사업 종료 |

※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.

※ 2023년도 단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정단체 설명회 시 안내 함.

7. 세부사업내용

| 구분 | 사업구성 | 공통기준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|
| 장애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| ① 초보자교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조건: 주 1~3회, 20회 이상 / 장애인 10명 이상 ※ 1. 초보자교실: 주 1회, 10회 이상 2. 기본조건은 운영단체 상황에 따라 협의가능 3. 중증장애인은 1명당 2명 인정(중증장애 유형별 1~3급) · 장 소: 공공체육시설 및 장애인전용체육시설, 체육관 등 · 대 상: 장애유형별 참여인원, 가맹단체 및 도내 대학, 특수학교(학급), 장애인 관련 단체(기관, 시설 등) ※ 초보자교실: 생활체육 신규 참여 인원 · 지원내용: 운영비(지도자수당, 운동용구, 홍보물 등) · 대상종목: 전 종목 | 기초생활수급권자 / 차상위계층대상 개인용품 지원 가능(1인당 단가 100천원 이하 보급형 수준 용품 지원) |
| | ② 지체장애교실 | | |
| | ③ 지적장애교실 | | |
| | ④ 청각장애교실 | | |
| | ⑤ 시각장애교실 | | |
| | ⑥ 이식장애교실 | | |
| | ⑦ 혼합및기타유형교실 | | |
| 장애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| ① 아동교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조건: 주 1~3회, 20회 이상 / 장애인 10명 이상 1. 기본조건은 운영단체 상황에 따라 협의가능 2. 중증장애인은 1명당 2명 인정(중증장애 유형별 1~3급) · 장 소: 공공체육시설 및 장애인전용체육시설, 체육관 등 · 대 상: 다계층(취학 전 아동, 청소년, 여성, 직장, 노인 등) 가맹단체 및 도내 대학, 특수학교(학급), 장애인 관련 단체(기관, 시설 등) ※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교실 권장 · 지원내용: 운영비(지도자수당, 운동용구, 홍보물 등) · 대상종목: 전 종목 | 기초생활수급권자 / 차상위계층대상 개인용품 지원 가능(1인당 단가 100천원 이하 보급형 수준 용품 지원) |
| | ② 청소년교실 | | |
| | ③ 직장인교실 | | |
| | ④ 여성교실 | | |
| | ⑤ 어르신교실 | | |
| 수중운동교실 | ① 수중운동교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조건: 주 1~3회, 20회 이상 / 장애인 10명 이상 1. 기본조건은 운영단체 상황에 따라 협의가능 2. 중증장애인은 1명당 2명 인정(중증장애 유형별 1~3급) · 장 소: 공공체육시설 및 장애인전용체육시설 등 · 대 상: 전 장애유형, 가맹단체 및 도내 대학, 특수학교(학급), 장애인 관련 단체(기관, 시설 등) · 지원내용: 운영비(지도자수당, 용기구, 홍보물 등) · 대상종목: 아쿠아 조깅, 수중에어로빅, 수중자전거, 근육이완운동 등 ※ 어울림교실 권장(가족, 친구, 보호자, 활동보조 등) | 기초생활수급권자 / 차상위계층대상 개인용품 지원 가능(1인당 단가 100천원 이하 보급형 수준 용품 지원) |
| | ② 생존수영교실 | | |
| 동호회(클럽) | ○ 동호회(클럽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조건: 주 1~3회, 20회 이상 / 장애인 10명 이상 1. 기본조건은 운영단체 상황에 따라 협의가능 2. 중증장애인은 1명당 2명 인정(중증장애 유형별 1~3급) · 장 소: 공공체육시설 및 장애인전용체육시설, 체육관 등 · 대 상: 전 장애유형, 통합정보시스템 승인 동호회(클럽) · 지원내용: 운영비(매니저수당, 용기구, 홍보물 등) · 대상종목: 전 종목 | 동호회(클럽)는 단일 장애유형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 어울림 등 복합장애유형 결성 가능 |

※ 초보자교실은 도비 예산으로 운영 요청(개소별 1,000천원 ~)

※ 수중운동교실, 생존수영교실, 동호회(클럽) 국비 예산으로 운영

※ 어르신교실 1개소 이상 의무 선정(창원, 진주, 통영, 사천, 김해, 거제, 양산)

8. 준수사항

- 국비 지원 선정단체는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(www.gosims.go.kr)에 기관등록 필수
- 교실, 동호회(클럽) 지원 사업의 경우 통합정보시스템(<http://total.koreanpc.kr>)에 참가 인원(교실, 동호회(클럽) 및 동호인) 등록 필수

9. 자격제한

- 타 시·군 소속의 단체(기관, 시설, 동호회)
- 단체장 및 담당자가 신용불량자인 단체(계좌 및 법인카드 발급 불가 단체 등)
-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이 불가능한 단체
- 중복지원 단체(시, 도비 등)

10. 선정방법

- 2023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(클럽) 지원 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사업을 선정
- 단위 사업별 지원개수와 상관없이 배점기준(100점 만점)에서 총 40점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
- 배점기준(100점) 총 4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신청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단체는 본회와 협의 후 다른 단위 사업으로 조정 가능
- 지역별 · 장애유형별 · 단체별 안배 및 조정 가능

11. 지원내용

가. 지원항목

| 목 | 세목 | 항목 | 금 액 | 지원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운영비 | 일반 수용비 | 지도자 수당 | 100,000원 이내 | 1일 기준 * 수어통역사 별도협의 | 교실 |
| | | | 50,000원 이내 | 1일 기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, 운영기관 소속직원 (종목지도자격입증) 수당 지급 시 | |
| | | 운영요원 수당 | 30,000원 이내 | 1일 기준 운영기관 소속직원 등 | 교실 |
| | | 클럽매니저 수당 | 월150,000원 | 지원기간 월별 정액지원 | 동호회 |
| | | 운동용품 | 실 비 | 공동용품 지원 * 개인용품 지원 불가 | 교실, 동호회 |
| | | 홍보물 | 실 비 | 현수막, 팜플렛, 포스터 | 교실, 동호회 |
| | | 방역물품 구입 | 개소당 30만원이하 | 소모성 방역물품 구입 (마스크, 소독제 등) | 교실, 동호회 |
| | 임차료 | 시설이용료 | 실 비 | 장소 임차비 및 입장료, 사용료 등 | 교실, 동호회 |
| | | 운동용품 | 실 비 | 용기구·장비 임차비 | 교실, 동호회 |
| | 기타 운영비 | 의료약품 | 실 비 | 소모성 의료약품 구입 | 교실, 동호회 |
| 공공요금및 제세 | 보증보험가입 | 실 비 | ※ 자부담 필수 가입 | 교실, 동호회 | |
| 업무 추진비 | 사업 추진비 | 간식, 음료 등 | 개소당 20만원이하 | 간식(음료 등) *식사금지 | 교실, 동호회 |

나. 주의사항

- 1) 사업계획 작성 시 지원항목과 기준금액만 지원가능하며, **사업별 수당의 총액은 보조금의 50%를 넘을 수 없음.**(단,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 협의 후 결정)
- 2) 지원항목 중 **운동용품**은 라켓류, 안전용품, 구기류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개별 가격이 100만원 이하의 용품을 말하며, **개인용품 및 피복비의 사용을 금함.**
(단, 기초생활수급권자/차상위계층대상자의 경우 1인당 단가 10만원 이하의 개인용품 및 소모용품 지원 가능)
- 3) 본회에서 파견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및 선정단체 소속 직원에게는 수당 지급이 불가함.(단, 선정단체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근 후, 주말 등 정규 근무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시간에 한하여 수당 지급 가능)

12. 제한사항

가.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은 **생활체육 전 종목 가능**

1) 장애유형별생활체육교실은 참가자가 **단일 장애 유형**으로 구성된 경우 신청 가능

※ 혼합 및 기타 운영 교실은 모든 장애 유형 가능

2) 통합정보시스템 동호회(클럽) 등록자는 **동일 종목 교실 참여 불가**

3) 참가자 명단은 **사전에 확보하여 제출 요망**

나. 동호회(클럽) 지원 사업은 활동 인원 10명 이상으로 **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·승인된**

동호회(클럽)을 대상으로 운영하고, 보조금은 대회 참가비 등 지원항목 외 사용 금지

1) 동호회(클럽) 소속 **전문체육(엘리트) 선수**는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생략

2) 참가자 명단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명단과 동일하게 제출

다. **홍보는 매체별 2건 이상 반드시 준수**

[현수막(배너), 인쇄물(팸플릿, 포스터), 인터넷(본회·단체 홈페이지, 블로그, 카페, SNS), 언론매체(전국·도내 신문 및 방송) 등]

※ **본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홍보 게시물 작성 필수**

라. 인쇄물 등 홍보매체에 반드시 주최, 주관, 후원, 재정후원 단체명 기재

| | |
|--|--|
| ○ 주최:  창원시장애인체육회 | ○ 주관:  선정단체 |
| ○ 후원:  경상남도 | 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|
| |  대한장애인체육회 |
| ○ 재정후원:  문화체육관광부 | 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,  복권위원회 |

마. 사업 장소는 편의시설 설치 유무 확인 후 선정하고, 임차계약서를 작성 후 제출

※ **사업자 미등록 업체는 임차 불가**

바. 시설이용에 따른 상해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응급처치체계 구축 필수

13. 기대효과

○ 여성·중증장애인, 신규 생활체육인 발굴과 확대

○ 교실과 동호회(클럽) 지원 참가자 이중 등록 제한으로 중복 수혜 예방

○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

○ 통합정보시스템 동호회(클럽) 신규 등록을 통한 당해 연도 정확한 활동 인원 파악

○ 교실 참가자가 동호회(클럽) 참가자로 전환하여 연속적인 생활체육활동 기대

14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1) 평가항목

| 구분 | 총점 | 운영 횟수 | 참여 인원 | 여성·중증 참여도 | 홍보매체 활용도 | 자부담 비율 | 조정 점수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| 100 | 20 | 20 | 20 | 20 | 10 | 10 |

2) 배점기준

| NO | 평가항목 | 배점기준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|
| 1 | 운영횟수 (20점)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20점</th> <th>17점</th> <th>14점</th> <th>11점</th> <th>8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6회 이상~</td> <td>11회 이상~ 15회 이하</td> <td>6회 이상~ 10회 이하</td> <td>1회 추가~ 5회 이하</td> <td>최소 횟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최소 횟수는 각 사업별 최소 운영횟수</p> | 20점 | 17점 | 14점 | 11점 | 8점 | 16회 이상~ | 11회 이상~ 15회 이하 | 6회 이상~ 10회 이하 | 1회 추가~ 5회 이하 | 최소 횟수 | | | |
| 20점 | 17점 | 14점 | 11점 | 8점 | | | | | | | | | | | |
| 16회 이상~ | 11회 이상~ 15회 이하 | 6회 이상~ 10회 이하 | 1회 추가~ 5회 이하 | 최소 횟수 | | | | | | | | | | | |
| 2 | 참여인원 (20점)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20점</th> <th>17점</th> <th>14점</th> <th>11점</th> <th>8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1명 이상</td> <td>7명 이상~ 10명 이하</td> <td>3명 이상~ 6명 이하</td> <td>1명 이상~ 3명 이하</td> <td>최소 인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참가자 중 장애인 참가인원(비장애인 제외)</p> | 20점 | 17점 | 14점 | 11점 | 8점 | 11명 이상 | 7명 이상~ 10명 이하 | 3명 이상~ 6명 이하 | 1명 이상~ 3명 이하 | 최소 인원 | | | |
| 20점 | 17점 | 14점 | 11점 | 8점 | | | | | | | | | | | |
| 11명 이상 | 7명 이상~ 10명 이하 | 3명 이상~ 6명 이하 | 1명 이상~ 3명 이하 | 최소 인원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여성·중증참여도 (20점)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20점</th> <th>17점</th> <th>14점</th> <th>11점</th> <th>8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1%이상</td> <td>30%~21%</td> <td>20%~11%</td> <td>10%~1%</td> <td>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산식=[(여성장애인수 + 중증장애인수)/총인원수×100]</p> | 20점 | 17점 | 14점 | 11점 | 8점 | 31%이상 | 30%~21% | 20%~11% | 10%~1% | 0% | | | |
| 20점 | 17점 | 14점 | 11점 | 8점 | | | | | | | | | | | |
| 31%이상 | 30%~21% | 20%~11% | 10%~1% | 0% | | | | | | | | | | | |
| 4 | 홍보매체활용도 (20점)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20점</th> <th>17점</th> <th>14점</th> <th>11점</th> <th>8점</th> <th>5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개 매체</td> <td>5개 매체</td> <td>4개 매체</td> <td>3개 매체</td> <td>2개 매체</td> <td>1개 매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홍보매체: 현수막, 유인물, 인터넷(SNS), 중앙·지역 언론보도</p> | 20점 | 17점 | 14점 | 11점 | 8점 | 5점 | 6개 매체 | 5개 매체 | 4개 매체 | 3개 매체 | 2개 매체 | 1개 매체 | |
| 20점 | 17점 | 14점 | 11점 | 8점 | 5점 | | | | | | | | | | |
| 6개 매체 | 5개 매체 | 4개 매체 | 3개 매체 | 2개 매체 | 1개 매체 | | | | | | | | | | |
| 5 | 자부담비율 (10점)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10점</th> <th>8점</th> <th>6점</th> <th>4점</th> <th>2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1%이상</td> <td>40%~31%</td> <td>30%~21%</td> <td>20%~11%</td> <td>10%~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산식=[자부담/총 예산(보조금+자부담)×100]</p> | 10점 | 8점 | 6점 | 4점 | 2점 | 41%이상 | 40%~31% | 30%~21% | 20%~11% | 10%~0% | | | |
| 10점 | 8점 | 6점 | 4점 | 2점 | | | | | | | | | | | |
| 41%이상 | 40%~31% | 30%~21% | 20%~11% | 10%~0% | | | | | | | | | | | |
| 6 | 조정점수 (10점) | ○ 조정점수 부여(0점 ~ 10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1. 목적

- 단체평가를 통한 지속적 지원 기준 마련으로 사업운영 질 향상
- 선정단체에게 사업 중요성에 대한 주의 환기 및 동기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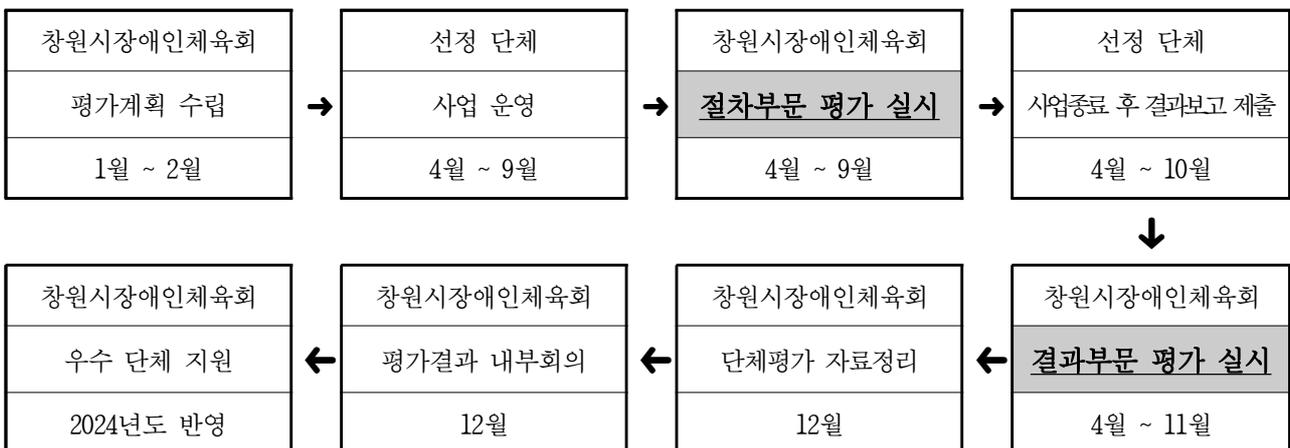
2. 추진방향

- 단체평가에 따른 결과는 차기년도 생활체육교실 및 대회 단체 선정 시 평가 자료로 활용 예정(평가는 총100점 만점 행정평가로 구성하고, 40점 미만인 단체에 대하여 차기년도 사업 지원 제한 가능)
- 절차부문은 회의참석 및 사업절차 준수 등 사업기간 중 실시하고, 결과부문은 예산 및 참가자 현황 등 결과보고서 접수 후 실시함

3. 평가대상

- 대상기관: 선정 단체

4. 추진일정



5. 평가 선정 기준

1) 평가항목

| 총점 | 절차부문(30) | | 결과부문(70)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사업설명회 참석 | 사업변경 절차준수 | 보조금 잔액발생 | 결과보고 제출일준수 | 자부담액 준수율 | 홍보건수 | 여성·중증 인원달성율 | 목표인원달 성율 |
| 100 | 15 | 15 | 10 | 10 | 15 | 10 | 10 | 15 |

2) 배점기준

| No | 평가항목 | | 배점기준 | | | | 비고 | |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|--|
| 1 | 절차부문 (30점) | 선정단체 설명회 참석 (15점) | 15점 | | 0점 | | | | |
| | | | 유 | | 무 | | | | |
| | | | ※ 사업설명회 참석 유무 평가(서명부 기재) | | | | | | |
| 2 | | 사업변경절차준수 (15점) | 15점 | | 0점 | | | | |
| | | | 유 | | 무 | | | | |
| | | | ※ 사업 변경 시 본회 승인 또는 자체 내부결재 존재 유무 평가 | | | | | | |
| 3 | | 보조금잔액발생 (10점) | 10점 | | 0점 | | | | |
| | | | 무 | | 유 | | | | |
| | | | ※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유무 평가 | | | | | | |
| 4 | | 결과보고제출일준수 (10점) | 10점 | | 0점 | | | | |
| | | | 유 | | 무 | | | | |
| | | | ※ 사업 종료 후 30일내 제출 유무 평가 | | | | | | |
| 5 | 결과부문 (70점) | 자부담액준수율 (15점) | 15점 | 10점 | 5점 | 0점 | | | |
| | | | 100%~91% | 90%~61% | 60%~31% | 30%~0% | | | |
| | | | ※ 계획대비 자부담액 집행비율 평가 | | | | | | |
| 6 | | 홍보건수 (10점) | 10점 | | 5점 | | 0점 | | |
| | | | 5건이상 | | 4건~2건 | | 1건 이하 | | |
| | | | ※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 총 건수 평가 | | | | | | |
| 7 | | 여성·중증인원달성율 (10점) | 10점 | 6점 | 3점 | 0점 | | | |
| | | | 100%~91% | 90%~61% | 60%~31% | 30%~0% | | | |
| | | | ※ 계획대비 여성·중증장애 인원 목표달성율 평가 | | | | | | |
| 8 | | 목표인원달성율 (15점) | 15점 | 10점 | 5점 | 0점 | | | |
| | | | 100%~91% | 90%~61% | 60%~31% | 30%~0% | | | |
| | | | ※ 계획대비 순수참가자(장애인) 목표달성율 평가 | | | | | | |

붙임: 1. 2023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사업 공모 운영계획서 서식 1부. 끝.